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 행 규 칙 안

2008. 11.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1.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08.3.21 공포, '09.3.22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방법 및 표지판 설치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방법 및 전담관리원의 업무, 품질인증식품 신청·심사·재심사 절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 식생활안전·영양수준 조사·평가 절차 및 방법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및 표지판 설치기준 (안 제2조, 제3조)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 방법 및 표지판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할 필요

(2)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나. 조리・판매업소 관리방법 및 전담 관리원의 업무(안 제4조, 제5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의 조리・판매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고, 전담 관리원은 조리・판매업소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계몽,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함.

(2) 전담관리원 지정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

다.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지정 절차 및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절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1) 우수판매업소의 대상업소별 시설기준, 지정 절차,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절차 등을 규정

(2)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함.

(3)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지원함.

라.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신청・심사・재심사 절차 및 방법 등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1) 품질인증식품의 표시기준, 품질인증의 신청・심사・재심사 절차 및 방법, 품질인증 취소기준 등을 규정

(2)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자 등은 품질인증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품질인증서를 교부함.

마. 건강친화기업 지정 절차(안 제15조, 제16조)

(1)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절차 및 로고 등의 표시방법 등을 규정

(2) 건강친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은 적합한 경우 건강친화기업지정서와 건강친화기업지정현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방법 및 절차(안 제17조)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등록된 집단급식소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등록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실시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였거나 부적합한 집단급식소를 등록·지원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경고 및 시정 등을 명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사.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조사·평가 절차 및 방법(안 제18조, 제19조)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군·구의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조사·평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후 다음해 3월에 공표하여야 함.

(2)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으로 하여금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

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평가를 받은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2) 규제심사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보고 등)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조리·판매업소 관리방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범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군단위 : 10개 학교 단위별 2명 이상 지정
2. 시 및 구단위 : 20개 학교 단위별 2명 이상 지정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담 관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의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제6조의 우수판매업소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거나 그밖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경고 또는 시설개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신청절차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비용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자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 대상식품의 성분명 및 배합비율
2. 인증 대상식품의 영양성분표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사본(식품등수입판매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제외)

4. 그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당 5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 등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심사반이 품질인증심사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한 후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영업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 후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에 따르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5조(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건강친화기업의 지정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다.

② 건강친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자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

관의 장(이하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업소에서 제조·가공·수입·조리·판매하는 어린이기호식품의 영양성분표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사본(식품등수입판매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제외)
3.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한 실적
4. 그밖에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지정을 심사한 결과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건강친화기업지정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건강친화기업지정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영업소에 대하여 건강친화기업의 지정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 제17조 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등록 신청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 수와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등록이 결정된 집단급식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집단급식소의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집단급식소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등록한 집단급식

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이하 “평가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등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부적합한 집단급식소를 등록·지원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경고 및 시정 등(이하 “경고등”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등을 명령한 내용은 해당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경고등의 명령을 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식생활 안전·영양수준 조사·평가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조사·평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평가대상 시·군·구의 선정
2. 조사·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인원 구성 및 교육
3. 조사·평가대상 시·군·구의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지 확인평가 실시
4. 조사·평가 결과 분석·통보 및 공표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조사·평가 계획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하기 3개월 전에 조사・평가대상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평가대상지역을 인구규모 및 생활여건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해 3월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항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관련 학계 등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운영하여 시・군・구의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반은 제1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를 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

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 표

[별표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 관련)

[별표 2]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우수판매업소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 (제7조 관련)

[별표 4] 우수판매업소 경고 등 기준 (제8조 관련)

[별표 5]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10조 관련)

[별표 6] 품질인증 취소 등 기준 (제14조 관련)

[별표 7]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
(제16조 관련)

[별 표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1) 가로형 : 가로 1200mm X 세로 500mm

2) 세로형 : 가로 600mm X 세로 1000mm

나. 재질 및 인쇄 : 10mm 투명아크릴판, 형광시트지, 실사이미지 UV 코팅

2. 도안요령

가. 내용 : “GRE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 ○○○ 시·군·구 －”

나. 글씨체 : HY헤드라인M

다. 색상

(1) 테·글씨(“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연두색

(2) 글씨(“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외) : 흑색

(3) 바탕 : 흰색

라. 규격

(1) 표지판은 주변 환경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설치위치는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정·후문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

(2)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가 분포된 지역

(3) 그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및 도로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역 및 주변 환경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표지판 등의 색깔이 퇴색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즉시 교체한다.

나. 전담관리원은 표지판 등의 설치 상태를 한 달에 1회 이상 점검한다.

다. 표지판 등이 훼손되거나 손괴된 것을 발견하는 즉시 보수한다.

[별표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제6조관련)

1.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2)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3) 업소 내에 방충시설,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주방

1)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2) 입석조리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4)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5)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다. 객실 및 객석

1)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
2)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1)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2) 손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되어야 한다.
4)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야 한다.

마. 종업원

1)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2)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3)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바. 기타

1) 물컵, 식기류 등 보관시설 및 오염방지용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기(뚜껑있는 처리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가. 건물의 위치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되어야 한다.
2)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유해가스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에는 쥐, 해충, 바퀴벌레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 취급시설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식품 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써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라. 판매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

1)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2) 손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되어야 한다.
4)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야 한다.

바. 종업원

1)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2)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3)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3. 기타 식품판매업소 및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의 업소

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2) 업소 내에는 방충시설,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 취급 및 판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보관기준이 정해진 식품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별표 3]

우수판매업소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제7조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330mm X 430mm

나. 구성 : 알루미늄 프레임, 양면조명보호대, 파워코드선

다. 재질 : 10mm 투명 아크릴, 실사이미지 UV코팅

※ 조명 장치를 위한 광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다.

2. 도안요령

가. 표시도형 문자의 활자체

(1) Good Food : VAG ROUND체

(2)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2002체

나. 표시도형 및 글씨의 색상

(1) 얼굴 모양 및 “Good Food” 글씨 : 연두색(Cyan 60 + Yellow 100)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글씨 : 흰색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글씨의 바깥면 : 주황색(Magenta 65 + Yellow 100)

3. 참고사항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동일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얼굴모양 왼쪽 하단의 흰 바탕에 시·군·구의 로고를 표시 할 수 있다.

[별표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경고 등 기준(제8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우수판매업소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법 제7조	시설개수명령	시설개수명령	지정취소
2.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 제7조	경고	경고	지정취소
3. 그밖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7조			
가.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1월 미만(시정명령 제외)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또는 해당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때		경고	경고	지정취소
나. 영업정지 1월 이상 2월 미만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또는 해당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때		경고	지정취소	
다. 영업정지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또는 해당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때		지정취소		

[별표 5]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제10조관련)

1. 표시기준

가. 도안모형

나. 도안요령

(1) 얼굴모양, 상단의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글씨, 하단의 바탕색의 색상은 주황색(Magneta 35+ Yellow 100)으로 하고, 하단의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글씨는 검정색(black20)으로 한다.

(2)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배율로 조정한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6]

품질인증 취소 등 기준(제14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결과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가 당해 식품등의 제조·가공·수입·운반·진열·보관 또는 조리·유통·판매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취소 등을 준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	인증취소	-	-
2.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식품 기준과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시정명령	표시 사용정지 15일	표시 사용정지 1월
3.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8조	인증취소	-	-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인증취소	-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법 제18조	표시 사용정지 3월	표시 사용정지 6월	인증취소
6.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시정명령	표시 사용정지 1월	표시 사용정지 2월

[별표 7]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제16조 관련)

1. 표시기준

가. 로고모형

나. 도안요령

(1) 얼굴모양, 상단의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글씨, 하단의 바탕색의 색상은 파란색(Cyan 80 + Magneta 20)으로 하고, 하단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글씨는 흰색으로 한다.

(2)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배율로 조정한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보고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조리·판매업소 현황 보고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9호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재심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현판

[별지 제13호서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증

[별지 제15호서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행정기관명)

수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보고**

1. 학교운영현황

①학 교 명							②학교장 성명		
③소 재 지	(전화) -								
④학 생 수	명						⑤학 급 수	개	
⑥1일 급식인원(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타	⑦운 영 형 태	직영 · 위탁	
⑧위 탁 급 식 (위탁한 경우에 한함)	업소명칭(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⑨매 점 개 수	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10종)					
⑩식품자동판매기 개수	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10종)					

2. 학교밖의 현황(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

⑪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종류	⑫ 업 소 수 (개소)	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10종)
총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 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 등의 업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⑭구 분	⑮위 치	⑯표지판 수(개)	⑰전담관리원 성명
학교			
학교밖			

< 약 도 >

※ 작성요령

1. ⑧란은 ⑦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⑪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의 종류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2. 이 외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3. ⑮위치에는 동·읍·면·리 등의 주소 또는 지정구역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기재합니다.
4. 약도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표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우수판매업소 및 설치한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호를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1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시·군·구)

1. 학교운영현황

①학 교 명							②학교장 성명		
③소 재 지								(전화) -	
④학 생 수	명						⑤학 급 수	개	
⑥1일 급식인원(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타	⑦운 영 형 태	직영 · 위탁	
⑧위 탁 급 식 (위탁한 경우에 한함)	위탁일자		위탁급식업 명칭				대표자 성명	연락처	
⑨매 점 개 수	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10종)						
⑩식품자동판매기 개수	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10종)						

2. 학교밖의 현황(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

⑪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종류	⑫업소수(개소)	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10종)
총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 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 등의 업소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사항

⑭구분	⑮위 치	⑯표 지 판 수(개)	⑰전담관리원 성명
학교			
학교밖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변경사항

⑱구 분 (해제 · 확대 · 축소)	⑲일자	⑳위 치	㉑조리·판매업소 수 (개소)	㉒우 수 판 매 업소 수 (개소)	㉓전 담 관 리 원 성명	㉔표 지 판 수(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5. 약도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행정기관명)

수 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 목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안의 조리·판매업소 현황 보고**

1.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①일련 번호	②학교명	③학교 소재지	④업소명 (상호)	⑤업소 소재지	⑥업소 종류	⑦대표자 성명	⑧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	⑨전담관리원 성명	⑪기타 특이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인)

297mm×210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실적(기간 :　　　년도 상반기/하반기)

⑫일련번호	⑬학교명	⑭관리인원(연인원)			⑮관리업소수			⑯위반업소수			⑰위 반 내 용							⑱조 치 결 과									
											우수판매업소			기타 판매업소				우수판매업소				기타 판매업소					
		소계	공무원	전담관리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소계	우수판매업소	기타업소	소계	우수판매업소	기타업소	고열량·저영양식품판매	우수판매업소시설기준위반	기타	무허가(신고)	표시기준위반	과대광고	기타	지정취소	시설개수명령	경고	기타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품목류제조정지	시정명령	기타	고발

※ 작성요령

1. ②는 해당 조리·판매업소가 위치한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학교를 기재합니다.
2. ⑥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5호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동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나. 이 외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3. ⑪은 우수판매업소 지정, 우수판매업소 시설비원 지원, 건강친화기업 지정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4. ⑯위반업소수 = 위반내용 건수 = 조치결과 건수

297mm×210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업소명(상호)		②영업의 종류	
③영업 형태		④영업신고번호 (신고일자)	
⑤영업자 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 소 재 지	(☎) ※ 인근 학교 :		
⑧영업장 면적			
⑨주요 판매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②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나. 이 외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2. ③영업 형태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3. ⑧영업장 면적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시 신고한 영업장 면적과 같음.
4. ⑨주요 판매 식품 : 영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중 주로 판매하는 식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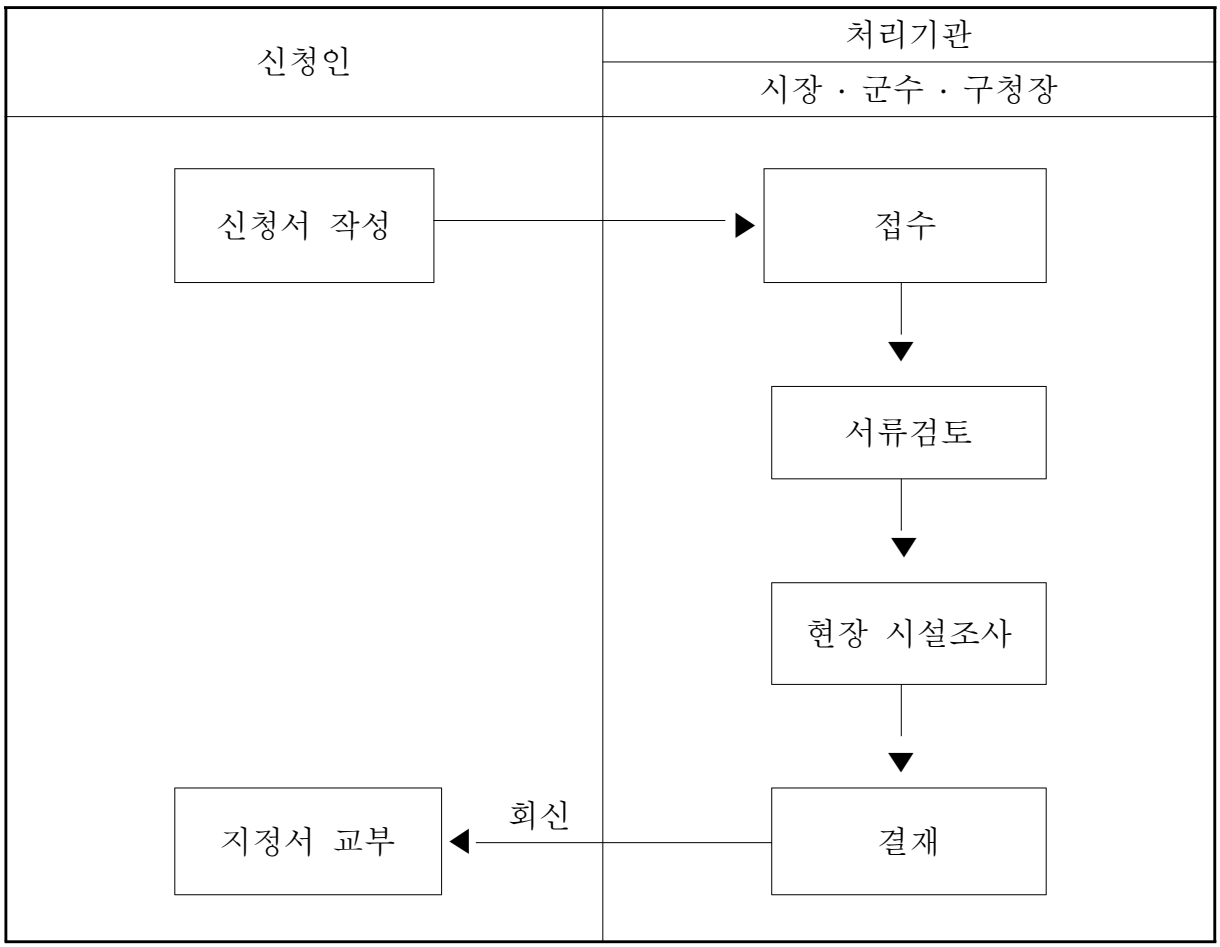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제 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1. 업 소 명 :

2. 영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XXXXXX

3. 소 재 지 :

4. 영업의 종류 : 영업신고번호 :

5. 주요 판매 식품 :

위 업소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연 월 일	내 용	담당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table>
<tr><td colspan="5">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신청서</td><td>처리기간
20일</td></tr>
<tr><td rowspan="4">신 청 인</td><td colspan="2">①업소명(상호)</td><td></td><td>②영업의 종류</td><td></td></tr>
<tr><td colspan="2">③영업 형태</td><td></td><td>④영업신고번호
(신고일자)</td><td></td></tr>
<tr><td colspan="2">⑤영업자 성명</td><td></td><td>⑥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⑦ 주 소</td><td colspan="3">(☏)
※ 인근 학교 :</td></tr>
<tr><td rowspan="4">신 청
내 용</td><td colspan="2">⑧시설 개·보수 내역</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⑨소요
경비</td><td>총경비</td><td>지원금 신청금액</td><td>자부담금</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⑩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비용 지원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5"></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②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5호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동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나. 이 외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2. ③영업 형태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 유의사항

비용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못하였거나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확정된 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지원받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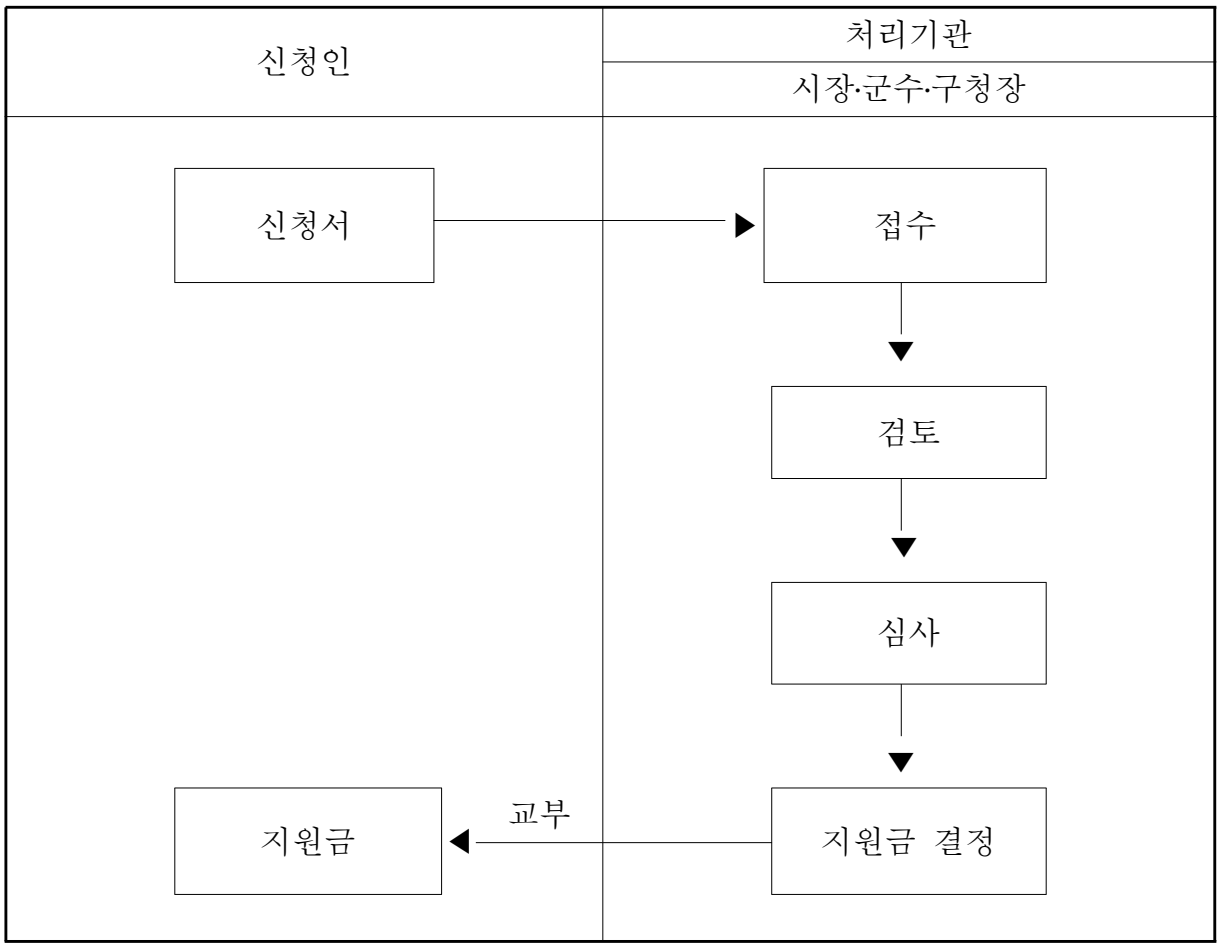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table>
<tr><td colspan="5">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td><td>처리기간
30 일</td></tr>
<tr><td rowspan="6">신청인</td><td colspan="2">①업소명(상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②영업의 종류</td><td></td><td>③영업허가
(신고)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④
소
재
지</td><td>본 사</td><td colspan="4">(☏)</td></tr>
<tr><td>공 장
(사 업 장)</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⑤대표자 성명</td><td></td><td>⑥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신청내용</td><td colspan="2">⑦제품명</td><td></td><td>⑧식품의 종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⑨생산계획량</td><td colspan="4">톤 /년</td></tr>
<tr><td colspan="6">「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장 귀하</td></tr>
<tr><td colspan="5">※ 구비서류
1. 성분명 및 배합비율 1부
2. 영양성분 검사성적서 1부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서 사본 1부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제외)
4. 그밖에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td><td>수수료

5만원</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②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영업의 종류
2. ⑧식품의 종류 : 영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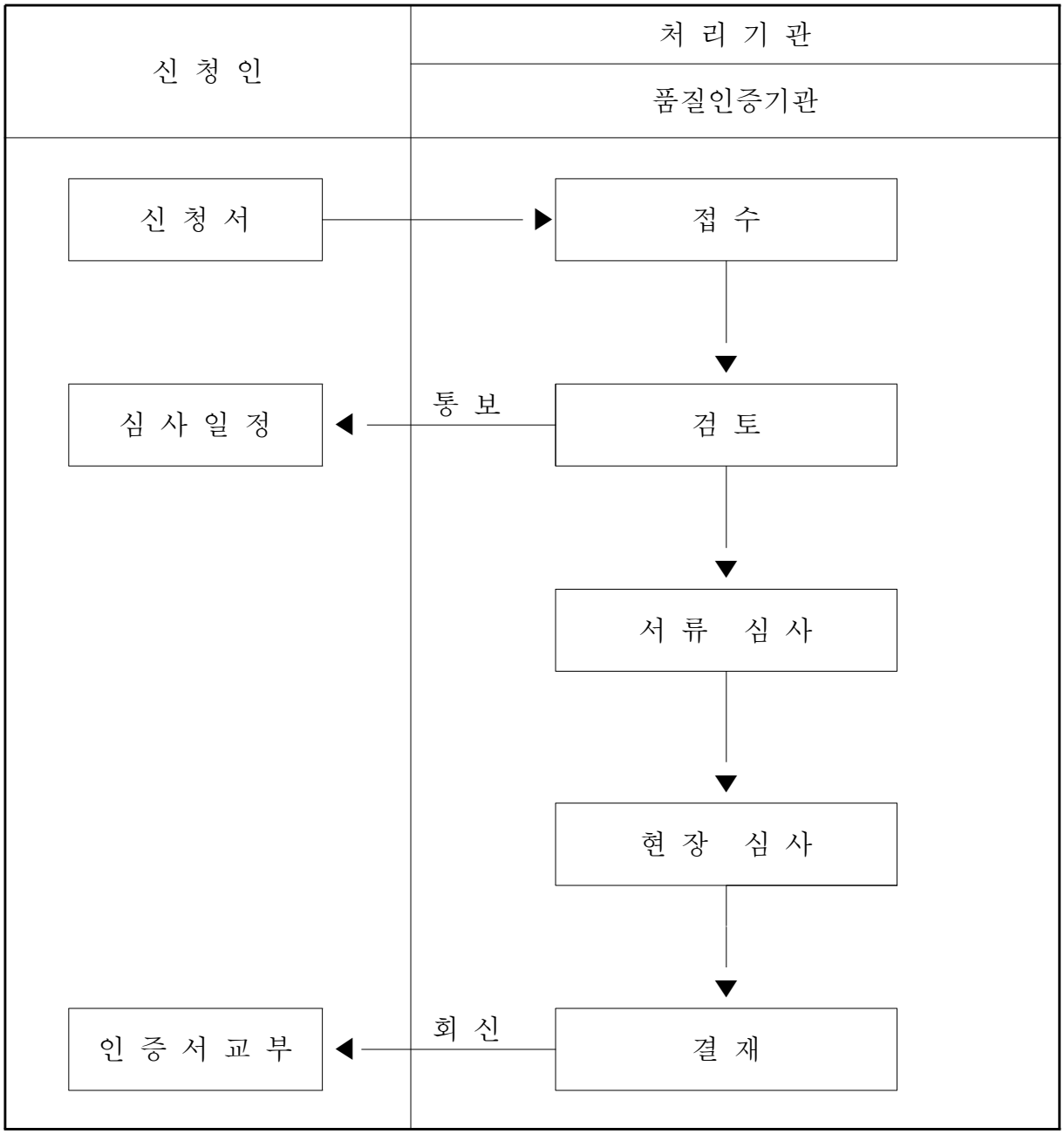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1. 제 품 명 :

2. 식품의 종류 :

3. 업 소 명 :

4. 소 재 지 :

5.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XXXXXX

6. 유 효 기 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사 항	확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table>
<tr><td colspan="5">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td><td>처리기간
30 일</td></tr>
<tr><td rowspan="6">신청인</td><td colspan="2">①업소명(상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②영업의 종류</td><td></td><td>③영업허가
(신고)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④
소
재
지</td><td>본 사</td><td colspan="4">(☏)</td></tr>
<tr><td>공 장
(사업장)</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⑤대표자 성명</td><td></td><td>⑥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⑦제 품 명</td><td></td><td>⑧식품의 종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⑨재심사 신청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7">「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재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td><td>수수료
5만원</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안내

1. ②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영업의 종류
2. ⑧식품의 종류 : 영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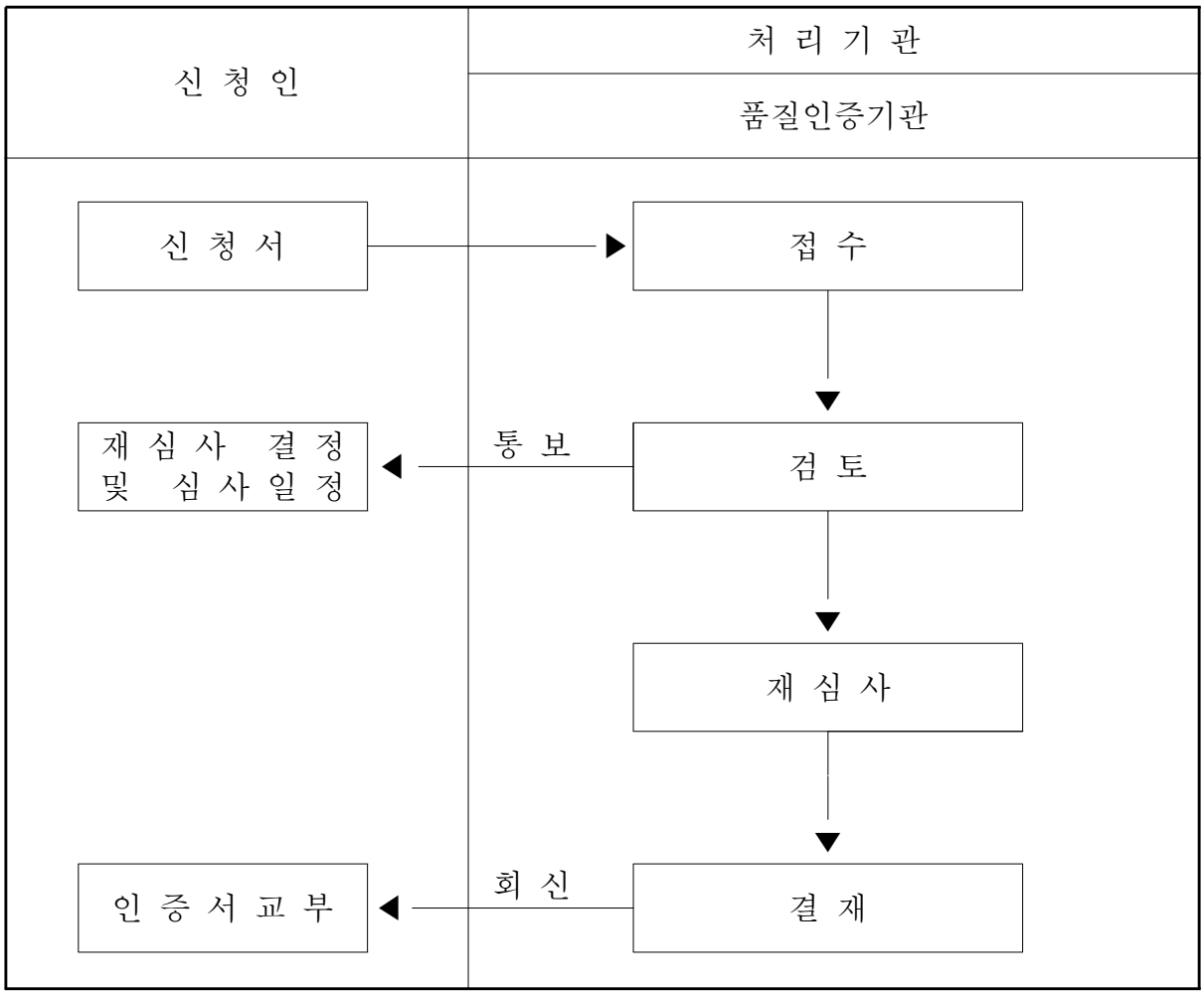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table>
<tr><td colspan="5">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td><td>처리기간
20일</td></tr>
<tr><td rowspan="6">신청인</td><td colspan="2">①업소명(상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②영업의 종류</td><td></td><td>③영업허가
(신고)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④소재지</td><td>본 사</td><td colspan="3">(☏)</td></tr>
<tr><td>공 장
(사 업 장)</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⑤대표자 성명</td><td></td><td>⑥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⑦사업장규모(면적)</td><td></td><td>⑧주 생 산 품</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⑨자 본 금(억 원)</td><td></td><td>⑩종업원수(명)</td><td colspan="2">사무직 :
생산직 :</td></tr>
<tr><td colspan="2">⑪모범활동 실적 요약</td><td colspan="5">※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 확보와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한 실적 1부</td></tr>
<tr><td colspan="2">⑫ 기 업 규 모</td><td colspan="5">□ 중소기업 □ 대기업</td></tr>
<tr><td colspan="7">「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 귀하</td></tr>
<tr><td colspan="5">※ 구비서류
1. 해당업소에서 제조·가공·수입·조리·판매하는 어린이기호식품의 영양성분 검사성적서 1부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서 사본 1부(식품등수입판매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제외)
3. 그밖에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td><td>수 수 료</td><td>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안내

1.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해당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간판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 제17조 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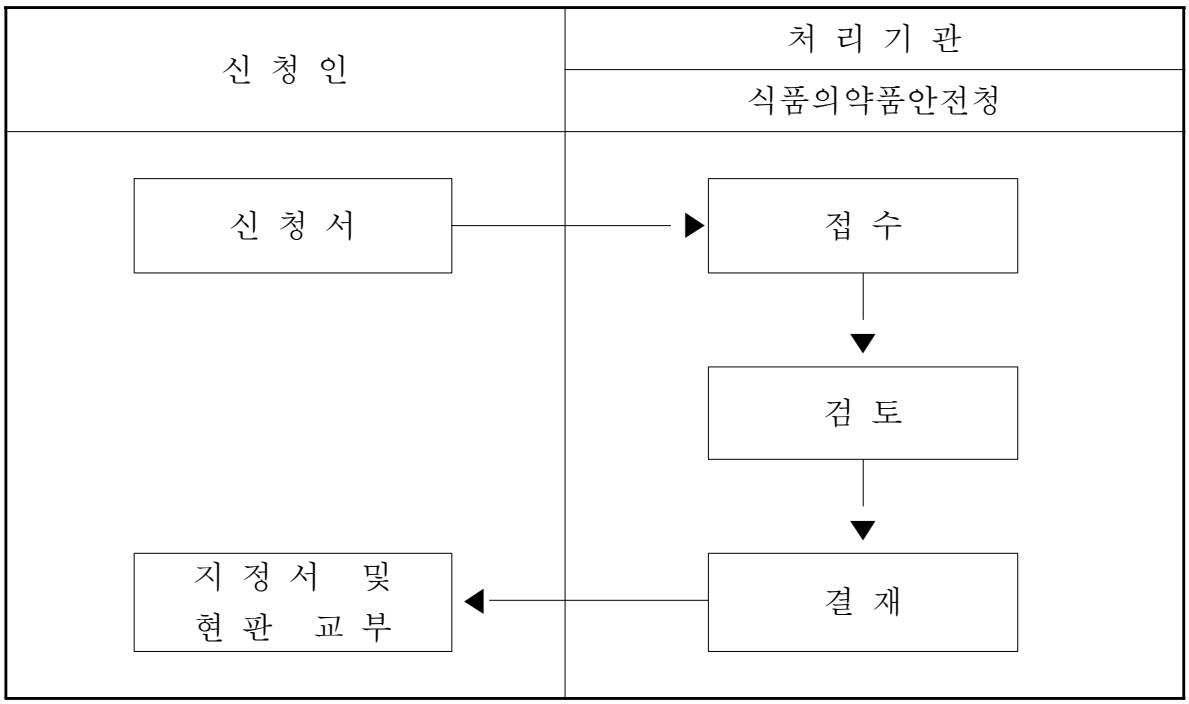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서

1. 업 소 명 :

2. 영업의 종류 : 영업신고번호 :

3.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XXXXXX

4. 소 재 지 :

귀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2호서식]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Children Health Friendly Company

상호 및 사업장

(지정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

□표시규격

○크기 : 가로 45cm×세로 30cm 두께 1.5cm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판

○글씨 : 명조체

○색체 : 바탕(회색), 글씨(“건강친화기업” 파란색, “정부마크”「나라문장규정」색상, “상호 및 사업장” 녹색, 그 외 검정색)

○둘레 : 0.2cm 두께의 검정색테(표시판 외변으로부터 0.8cm 띄워 표시)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table>
<tr><td colspan="8">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신청서</td><td>처리기간
7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
(대표자)</td><td>①성명</td><td colspan="3"></td><td>②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③주소</td><td colspan="7">(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2">④기관의 명칭</td><td colspan="3"></td><td>⑤설립주체</td><td colspan="3">국영·공영·민영</td></tr>
<tr><td colspan="2">⑥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번호</td><td colspan="3">제 호</td><td>⑦신고일자</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 colspan="2">⑧집단급식소의 소재지</td><td colspan="7">(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2">⑨급식소 종류</td><td colspan="3"></td><td colspan="2">⑩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 여부(학교에서 설치·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한함)</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⑪1일 급식인원(명)</td><td>계</td><td>아침</td><td>점심</td><td>저녁</td><td>야식</td><td>기타</td><td rowspan="2">⑫1인당 평균 급식비(식품재료비)</td><td rowspan="2">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⑬종사자수</td><td colspan="7">계 명 (조리사 명, 기타 명)</td></tr>
<tr><td colspan="2">⑭운영형태</td><td colspan="3">직영·위탁</td><td>공동관리여부
(○ · ×)</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⑮위탁급식(위탁한 경우에 한함)</td><td colspan="2">업소명칭
(신고번호)</td><td></td><td>대표자
성명</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 colspan="9">「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를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8">※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⑨급식소 종류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소
   나.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라. 「청소년기본법」 에 따라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집단급식소
   마.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을 하는 어린이의 비율이 급식인원의 50퍼센트 이상인 시설의 집단급식소
2. ⑮란은 ⑭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①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②주민등록번호는 생략할 수 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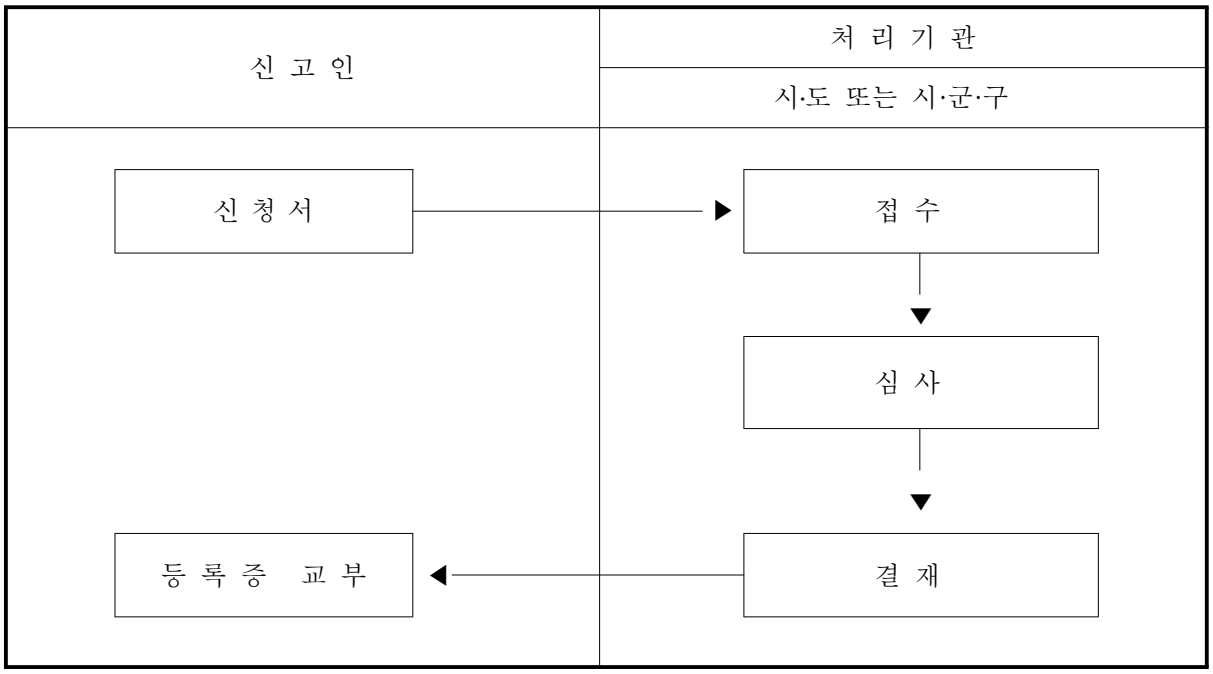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제 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증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시설명칭 :

소 재 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사 항	확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서식]

(제1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대장

1. 등록사항

<table>
<tr><td>①업 소 명</td><td colspan="8"></td></tr>
<tr><td>②등록번호</td><td colspan="3">제 호</td><td colspan="2">③등록일자</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 rowspan="2">④소 재 지</td><td colspan="2">본 사</td><td colspan="6">(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2">사 무 소</td><td colspan="6">(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2">⑤대 표 자</td><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6">(전화번호 :)</td></tr>
<tr><td>⑥급식소 종류</td><td colspan="4"></td><td colspan="2">⑦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통합운영 여부(학교 집단급식소에 한함)</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⑧1일 급식인원 (명)</td><td>계</td><td>아침</td><td>점심</td><td>저녁</td><td>야식</td><td>기타</td><td colspan="2" rowspan="2">⑨1인당 평균 급식비 (식품재료비)</td><td rowspan="2">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⑩운영형태</td><td colspan="4">직영·위탁</td><td colspan="2">공동관리여부 (○ · ×)</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⑪위탁급식(위탁한 경우에 한함)</td><td colspan="2">위탁일시</td><td colspan="3">업소 명칭</td><td>대표자</td><td colspan="2">연락처</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td><td colspan="2"></td></tr>
</table>

2. 등록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성명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3. 업소규모

업 장 규 모		종 업 원 수		
①대 지 면 적	㎡	④총 원		명
②건 물 면 적	㎡	⑤본 사		명
③작업장면적 (조리장, 취식장)	소계 ㎡	⑥ 종 사 자	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 타	명
⑦건 물 소 유 구 분	자가·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4. 조리사 지정사항

구분(지원, 해임)	일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직 책

5. 담당 영양사 지원사항

담 당 기 간	성 명	담 당 기 간	성 명

6. 담당 위생업무담당자 지원사항

담 당 기 간	성 명	담 당 기 간	성 명

6. 기타 행정조치 사항

연 월 일	구 분	조 치 내 용	기재자 직·성명